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유용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485

발의연월일: 2025. 5. 12.

발 의 자:유용원·김소희·김미애

안철수 · 최형두 · 이헌승

조승환 · 정희용 · 임종득

이달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존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연도별 수치목표에 근거하고 있어 저출산·인구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유연한 정책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. 또한, 여성 군인의 활용분야 확대,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상비병력의 적정 조정, 간부 비율의 합리적 유지, 예비전력의 정예화 및 적정 규모화, 책임운영기관의확대 등 새로운 국방운영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함.

이에 여군 인력의 활용확대, 병력 및 간부구조의 조정, 예비전력의 운영체계 개선과 관련한 기존의 목표연도 및 수치 기준을 삭제하여 변화하는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, 민간자원 활용의 확장성을 부여하여 전투근무지원 분야에 한정된 책임운영기관의 역할 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작전 수행능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6조, 제17조, 제25조, 제26조, 제27조).

법률 제 호

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 중 "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장교 정원의 100분의 7까지,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까지 여군 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"를 "여군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, 여군이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"국방업무의"를 "국군이 수행하는 업무 중"으로, "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업무를 분야별·기능별로 구분하여 책임운영기관"을 "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에 대하여 군 책임운영기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책임운영기관"을 "군 책임운영기관"으로 한다.

제25조제1항 중 "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"를 "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안보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수준을 유지하여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항의목표"를 "제1항의 적정"으로, "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수준을 정할"을 "정할"로 한다.

제26조제1항 중 "2020년까지 기술집약형"을 "인공지능 등의 과학기술 강군 육성의"로, "연차적으로 각 군별 상비병력의 100분의 40 이상 수

준으로"를 "적정 수준의 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"으로 한다. 제27조제2항 중 "2020년까지 상비병력규모"를 "상비병력규모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) 국방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상비
군 규모의 적정 수준을 정하여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5조
에 따른 최초의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여군 인력의 활용확대) ①	제16조(여군 인력의 활용확대) ①
국방부장관은 여성인력의 활용	
을 확대하고 우수한 여군 인력	
을 활용함으로써 전력을 강화	
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연차	<u>여군 인력을 지속</u>
적으로 장교 정원의 100분의 7	적으로 확충하고, 여군이 다양
까지,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	한 분야의 경력을 갖출 수 있
까지 여군 인력을 확충하여야	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<u>한다</u> 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7조(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)	제17조(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)
① 국방부장관은 <u>국방업무의</u>	①
전문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	<u>행하는 업무 중</u>
기 위하여 전투근무지원 분야	<u>경</u> 쟁원리에 따라
의 업무를 분야별・기능별로	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
구분하여 책임운영기관으로 지	에 대하여 군 책임운영기관
정・운영하거나, 민간부문에 위	
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	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<u>전투</u>	② <u>-</u>
근무지원 분야의 책임운영기관	책임운영기관
지정・운영 및 업무위탁에 관	
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	
로 정한다.	

- 제25조(상비병력 규모의 조정) ① 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 조의 개편과 <u>연계하여 2020년</u> 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.
 - ② 제1항의 목표 수준을 <u>달성</u> 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수준을 정할 때에는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위협평 가,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평화상태의 진전 상황 등을 고 려하여야 하고, 이를 매 3년 단 위로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 한다.

③ ~ ⑤ (생 략)

제26조(적정 간부비율의 유지) ① 저 국군의 장교·준사관 및 부사 관 등 간부의 규모는 <u>2020년까 지 기술집약형</u>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<u>연차적으로 각 군별</u> 상비병력의 100분의 40 이상 수준으로 편성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27조(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저 정예화) ① (생 략)

세25조(상비병력 규모의 조정) ①
<u>예산 또는 인력 등</u>
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안보위협
에 대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
적정수준을 유지하여야
② <u>제1항의 적정정할</u>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세26조(적정 간부비율의 유지) ①
<u>인공지능</u>
등의 과학기술 강군 육성의
적정 수준의 비율이
유지될 수 있도록
② (현행과 같음)
세27조(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
전예항) ① (혀해과 간음)

- ② 예비전력규모는 <u>2020년까지</u> ② -----<u>상비병력규모</u> <u>상비병력규모</u>와 연동하여 개편 • 조정하여야 한다.
- ③ (생 략)

- ③ (현행과 같음)